

#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50호 2021. 6. 7.(월요일)

## 규 칙

- 하동군 규칙 제1232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

##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21-113호 목도마을 만들기 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2차) 승인 고시· 5
- 하동군 고시 제2021-116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 6

##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21-868호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8
- 하동군 공고 제2021-892호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4

##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21-769호 2021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신청 공고(2차)· 18
- 하동군 공고 제2021-783호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공고(2차)· 27
- 하동군 공고 제2021-828호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분 공시송달 공고· 40
- 하동군 공고 제2021-861호 부동산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건축물)· 42
- 하동군 공고 제2021-881호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안내· 45
- 하동군 공고 제2021-891호 2021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2차) 신청 공고· 47
- 하동군 금남면 공고 제2021-13호 2021년 가시권 덩굴류 제거 작업원 모집 공고· 57
- 하동군 공고 제2021-924호 2021년 여권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61

회									
람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예산과 (055)880-2041, 행정2041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6월 7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규칙 제 1232 호

###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제1호 중 “지역집중유치업종”을 “지역특성화업종”으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전략산업 투자기업 지원) ①                      조례 제24조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군의 전략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기존의 사업장 부지 및 건물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p> <p>1. · 2. (생 략)</p> <p>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4조제3호에 따라 지정된 <u>지역집                      중유치업종</u></p> <p>4. · 5. (생 략)</p> <p>② · ③ (생 략)</p> <p>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송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제1항제3호부                      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                      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지보                      조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단, 입주기업의 요청 시                      입지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시설보조                      금으로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1. 제1항제3호에 따른 <u>지역집중유                      치업종</u>의 경우 분양가액의 100분                      의 30 이하로 한다. 이 경우 m<sup>2</sup>                      당 지원단가는 76,610원을 초과할                      수 없다.</p> <p>2. (생 략)</p> <p>⑤ (생 략)</p>	<p>제17조(전략산업 투자기업 지원) ① -                      -----                      -----                      -----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                      ----- <u>지역특성화업종</u></p> <p>4. · 5.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                      -----                      -----</p> <p>1. ----- <u>지역특성화업종</u>                      -----                      - - - - - .                      -----                      -----</p> <p>2.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하동군 고시 제2021-113호

# 『목도마을 만들기 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2차) 승인 고시

하동군 『목도마을 만들기 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2차)을 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 제58조 제3항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5월 26일

## 하 동 군 수

1. 사업의 명칭 : 목도마을 만들기 사업(공동생활홈)

2. 사업의 목적

-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로 지역 특성을 골고루 잘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도출함으로써 역동적인 지역발전의 기틀을 확립하고자 함

3. 사업비 : 금252백만원

4.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사업구역: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일원
- 사업내용
  - 공동생활홈 리모델링, 지역역량강화 등

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500	-	250	250
국비	-	-	-	-
도비	-	-	-	-
군비	500	-	250	250

6.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7. 사업시행 기간 : 2020년 ~ 2021년(2개년)

8. 기타사항

- 주요 사업내용, 세부 설계도서 등은 담당부서(건설교통과 지역개발담당, T.055.880.2548)에 비치하며, 일반인 열람 가능

하동군 고시 제2021 - 116호

## 도로명주소 부여 · 변경 ·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변경 및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5. 31.

###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궁단로 25-109 외 1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2건)				

- 도로명주소 변경 :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새터길 9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건)				

- 도로명주소 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상시목길 39 외 1건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별 지 참 조(2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5)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 5. 3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508-1, 1018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공단로 25-109	20210531		20070618	고전면과 양보면 경계에 있는 과거 관아에서 체력단련과 궁술 연마를 위하여 공단이라는 옛터에서 도로명부여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탐리 579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71-9	20210531		20070618	도지정 기념물 제21호인 지리산 쌍계사 가는길로 탐방객의 인지도를 고려하고 역사성을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신성리 908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동로 346-12	20210531		20070618	도로시점이 악양중심으로 부터 동쪽에 위치하여 방향성에 따라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 1389-6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2415-5	20210531		20090302	횡천-청암간 도로로 주 이용도로가 청학동으로 가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안계리 301-12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1294	20210531		20090702	행정구역명(옥종+단성면) 활용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흥룡리 1121-5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범바위길 33-34	20210531		20070618	범의 형국을 갖춘 옛 지명에서 유래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북방리 738-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북방우회길 109	20210531		20080402	넓고 비옥한 평야를 상징한다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명에 지역특성을 함성하여 북방우회길로 명명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화정리 868-4, 868-5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상촌길 120-17	20210531		20070618	북천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우복리 1422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서비길 42-72	20210531		20090302	서촌에서 비파로 이어지는 길로 서비길로 명명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산3-1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소송양달길 98-1	20210531		20080402	소송의 양달편 위아래에 있는 마을로 옛지명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정금리 468, 471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신촌도심길 87	20210531		20090302	골짜기의 옛지명에서 유래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326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길 57	20210531		20111013	쌍계사로 진입하는 주도로로 지역의 대표성을 도로명에 반영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변경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새터길 15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새터길 9	20210531		20070618	새의터 학의터 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새장터길로 명명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상시목길 39	20210531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흥룡길 62-35	20210531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하동군 공고 제 2021-868 호

##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6일

###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2. 제안 이유
  - 옥외광고심의 처리기간 변경 및 재심의 근거 마련
  -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3. 주요 내용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처리 기간 연장(안 제12조제3항 신설)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재심의 신청 근거 마련(안 제12조제5항 신설)
  -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6 제2호 신설)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하동군 건설도시국 도시건축과(전화 055-880-2139, FAX055-880-2109, e-mail guddi@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별표, 별지서식 포함)
2. 신구조문대비표. 끝.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제5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을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이용간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을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을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별표 6 제2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3호,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

위반 행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비고
<p><u>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u></p> <p><u>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u></p> <p><u>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u></p> <p><u>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u></p>	<p>법 제20조제1항제1호의3</p>	<p><u>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u></p> <p><u>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u></p> <p><u>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u></p>	<p>(좌동)</p> <p>(좌동)</p> <p>(좌동)</p>
<p><u>3.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u></p> <p>가. 30일 이상 90일 미만</p> <p>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p> <p>다. 180일 이상 1년 미만</p> <p>라. 1년 이상</p>	<p>법 제20조제1항제2호</p>	<p>50만원</p> <p>83만원</p> <p>167만원</p> <p>333만원</p>	
<p><u>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u></p> <p>가. 연 1회 위반한 경우</p> <p>나. 연 2회 위반한 경우</p> <p>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p>	<p>법 제20조제1항제5호</p>	<p>80만원</p> <p>200만원</p> <p>500만원</p>	
<p><u>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u></p> <p>가. 1회 위반한 경우</p> <p>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p> <p>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p>	<p>법 제20조제2항</p>	<p>25만원</p> <p>45만원</p> <p>100만원</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 물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 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 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광 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 다.</p>	<p>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 ----- ----- ----- . ---- ----- ----- ----- .</p>
<p>1.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u>제5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u></p>	<p>1 . ----- ----- <u>제8조제2항제2</u></p>
<p>2. ~ 6. (생략)</p>	<p>2. ~ 6. (현행과 같음)</p>
<p>제10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 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u>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 부를</u> 지원할 수 있다.</p>	<p>제10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 ----- 소 <u>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u> --- -----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 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 광고 산 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u>운영비의 전 부 또는 일부를</u> 지원할 수 있다.</p>	<p>③ ----- ----- ----- ----- 운 <u>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u> ----- ----- .</p>
<p>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p>	<p>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p>

• ② (생략)

<신설>

③ (생략)

<신설>

• 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하동군 공고 제2021 - 892호

##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31일

###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2. 개정 이유
  - 엑스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엑스포 기간 중 불편을 감수할 하동군민에게 입장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입장권 구매자에 대한 상품권, 보상금 등 제공의 법적 근거 마련
  - 엑스포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엑스포 홍보 및 이벤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3. 주요 내용
  - 입장료의 감면 조항 신설(안 제10조)
    - 하동군민에 대한 입장료 감면 혜택 제공
  - 보상금 등 조항 신설(안 제11조)
    - 입장권을 구입한 자에 대한 보상금 및 상품권 지급
  - 편의 등 제공 조항 신설(안 제12조)
    - 엑스포 관람객 편의도모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행
    - 엑스포 홍보 등을 위한 관촉물 또는 기념품 등 제공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1년 6월 20일(일)까지 하동군 문화환경국 특화산업과(참조 : 전화 055-880-6833, FAX 055-880-2739, e-mail jcy1251@korea.kr)로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입장료의 감면) 재단은 하동군민에게 입장료의 100분의50 범위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엑스포 입장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보상금 등) 재단은 입장권을 구입한 자에게 입장료의 범위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및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편의 등 제공) ① 재단은 행사기간 중에 엑스포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장(연계 시·군 포함)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관측물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람객 유치 및 엑스포 홍보를 위해 방문한 기관 및 단체 관계자에게 제공
2. 업무협약식,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자에게 제공
3. 엑스포 지원협의체, 자원봉사단 및 도민홍보단 등 참여자에게 제공
4. 엑스포 설명회, 팸투어 및 홍보마케팅 등 행사 참가자에게 제공
5. 엑스포장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엑스포 업무추진 관련 초청자에게 제공
6. 그 밖에 관람객 유치 및 홍보 활동 시 제공

③ 재단은 공모전 및 이벤트를 개최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입장료의 감면) 재단은 하동군민에게 입장료의 100분의50 범위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엑스포 입장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보상금 등) 재단은 입장권을 구입한 자에게 입장료의 범위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및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p>제12조(편의 등 제공) ① 재단은 행사 기간 중에 엑스포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장(연계 시·군 포함)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p> <p>② 재단은 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관촉물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람객 유치 및 엑스포 홍보를 위해 방문한 기관 및 단체 관계자에게 제공</li> <li>2. 업무협약식,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자에게 제공</li> <li>3. 엑스포 지원협의체, 자원봉사단 및 도민홍보단 등 참여자에게 제공</li> <li>4. 엑스포 설명회, 팸투어 및 홍보 마케팅 등 행사 참가자에게 제공</li> <li>5. 엑스포장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엑스포 업무추진 관련 초청자에게 제공</li> <li>6. 그 밖에 관람객 유치 및 홍보 활동 시 제공</li> </ol> <p>③ 재단은 공모전 및 이벤트를 개최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p>
제10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하동군 공고 제2021-769호

## 2021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공고(2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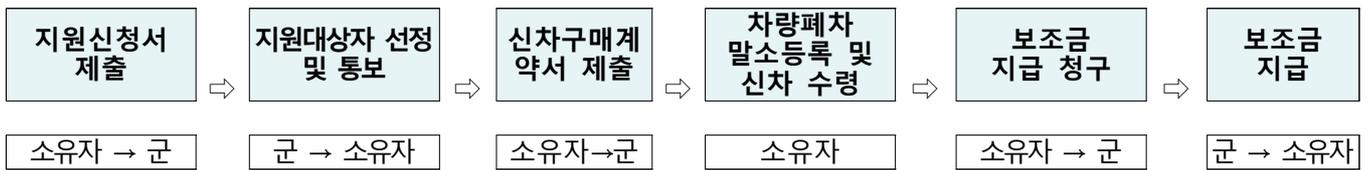
운행 가능한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2021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희망하시는 차량 소유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5. 6.  
하 동 군 수

### □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 신청기간 : 2021. 5. 10.(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물량 : 128,000천원, 32대분
- 지원금액 : 400만원/대(정액지원)
- 신청방법 : 서류누락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가능
  - 접수처 : 하동군청 환경보호과(별관 1층)
  - 주소 : 우)52333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환경보호과
  - ※등기우편의 경우 서류를 잘 갖춰서 제출하기 바람에 제출한 서류는 반송하지 않음 (일반우편 불가)
  - ※신청자는 서류 정상 도달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우리 군에서 책임지지 않음
  - 접수시간 : 토·일을 제외한 근무시간(09~18시)내 접수
- 지원대상
  - 자동차등록증상 사용본거지가 **하동 내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제외)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LPG 1톤 화물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쓰는 차량
  -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사용 본거지 하동 등록
  - 자동차등록원부상 등재된 차량 소유주 주소 하동 등록
  -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를 우선적으로 지원
  -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이미 한 차량은 의무운행기간(2년) 지난 경우에 한함
  - 하동군 내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는 자

○ LPG 화물차 신차 보조금 지급 절차



○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신청시 구비서류

① (공통서류)

- [붙임1] 사업 지원신청서 1부
-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폐차 대상 경유차량) 또는 자동차말소등록증 사본 1부
- 차량 소유주 주민등록등본 1부
- 차량 소유주 신분증 사본

② (법인인 경우)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개인, 비영리법인 등) 공통서류,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 대상자 선정 후 14일 이내 신차구매계약서 제출

《대리 신청하는 경우》

- 공통서류 +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차주의 인감증명서(위임장 인감날인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위임장 서명시)

《공동 소유인 경우》

- 공통서류 + 신분증 사본
- 소유자 중 1명을 신청인으로 하고 또 다른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LPG 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 신청시 구비서류(선정 후 보조금 청구시)

① (공통서류)

- [붙임3]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 [붙임4] 청렴이행서약서 1부
- 자동차 말소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LPG화물차 신차)
-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② (법인인 경우) 공통서류,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③ (개인, 비영리법인 등) 공통서류, 인감증명서 및 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차량의 경우 지원신청서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 (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붙임4]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지원대상자 취소 ◀

-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후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내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후 정당한 사유없이 4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폐차 및 신차 출고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 보조금 청구방법

-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후 **14일 이내** LPG화물차 **신차 구매계약서** 제출
-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후 **4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신차 출고에 대한 증빙자료(자동차 말소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제출
- ※ 제작사의 사정으로 인한 차량 출고지연으로 기한 내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출고예정서 등 출고지연 증빙자료 제출시 서류 제출기한 연장가능
- **자동차등록증상 폐차 소유자와 신차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함  
(공동소유일 경우, 1인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이전 2개월 이내에 폐차말소 또는 신차를 계약하거나 구매 등록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신청 가능

## □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 보조금을 지급
  - 제출한 서류에 보완 또는 이상이 있을 시에는 보완을 요청한 날로부터 완료된 날까지 기간은 처리기한에서 제외함
- 보조금은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 □ 보조금 지급 취소 및 환수

-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함  
(단, 자동차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② 또는 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는 제외함)
  -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②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신차 구매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 ③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 □ 기타

-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함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및 「2021년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보조금 지원신청서 기재내용, 첨부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보완내용을 이행한 이후 신청서를 접수

## □ 문의

- 전화 : 하동군 환경보호과 운행차 저감사업 담당자(☎055-880-2564)







[붙임4]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하동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하동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하동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1. . .

성 명

(서명)



[붙임6]

# 포 기 서

① 사 업 명		2021년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신 청 인 (대표자)	② 성 명		③ 생년월일	
	④ 주 소			
신 청 내 용	⑤ 포기사유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기 신청한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포기합니다.

2021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하동군 공고 제2021-783호

##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2차)

운행 가능한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희망하시는 차량 소유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5. 7.

하 동 군 수

###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신청기간 : 2021. 5. 10.(월) ~ 2021. 5. 25.(화)

○ 선정자 통보 : 2021. 5. 28.(금)

- 사업 선정자 개별 우편발송

○ 사업물량 : 100대분(예산범위내), 300백만원

※ 차종 및 연식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됨에 따라 지원 대수 변동가능,

예산 소진시기 최종 잔량에 대하여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을 따로 둘 수 있음

○ 신청방법 : 서류 누락방지를 위해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가능

1. 접 수 처 : 하동군청 환경보호과(별관 1층)

- 주소 : 우)52333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환경보호과

- 우편접수의 경우, 본 사업 신청기간 내에 도달한 것만 인정함

※ 등기우편의 경우 서류를 잘 갖춰서 제출하기 바람에 제출한 서류는 반송하지 않음 (일반우편 불가)

※ 신청자는 서류 정상 도달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우리 군에서 책임지지 않음

2. 접수시간 : 토·일을 제외한 근무시간(09~18시)내 접수

- 신청자가 사업물량 초과시 **우선 순위순**으로 선정

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 차량

②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차량

③ 총중량 3.5톤이상 차량, 2002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④ 인증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이 없거나 장치 미개발로 해당 지자체의 저공해조치 명령 유예를 받은 차량

## □ 조기폐차 지원 기준

### ○ 조기폐차 신청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5등급 확인방법

-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조회(<http://emissiongrade.mecar.or.kr/>)
- 콜센터(1833-7435) 안내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 신청일 현재 **하동군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차량등록원부상 등재된 차량 **소유주 주소 하동 등록**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4.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5.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6.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사업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7.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는 자

### ○ 지원 금액 및 산정 기준

1.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추가지원
    -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 신규 등록(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량 가능하나,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경우 지원대상 제외)시 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 차량은 Euro6 이상 차량('21.1.1일 이후 출고차량)을 신규 등록(중고차량 제외)시(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 범위 이내의 규격 증가 인정) 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
2. 2003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3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3.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 차량기준가액 10%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4.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5.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말소등록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 **수출말소 및 차령초과말소 제외**
6. 생계형 차량지원 대상은 보조금 신청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신청 전 1개월 이내 발급)를 첨부

사안별 생계형차량 적용기준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수급자인 경우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으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 인정
- \* 지입차량 소유주가 생계형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7.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 또는 장치제작사를 통해 확인 받은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원 추가 지원**(기본 지원을 상한액 범위 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300	70%	30%( <b>경유차 제외</b> )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100%	200% (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5,500cc 초과		
	7,500cc 이하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 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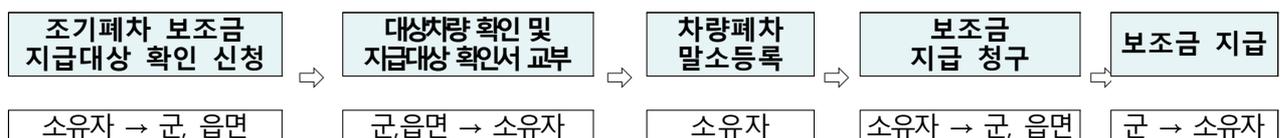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①-④ 해당 차량에 한하여 **상한액 600만원**

- ①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 ②영업용 차량
- ③소상공인이 소유(대표자가 소유한 경우도 포함)한 차량
- ④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절차

-기본지원



-추가지원



**○ 조기폐차 신청시 구비서류**

- ① [붙임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 ②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 ③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
- ④ 소유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⑤ 자동차검사결과 증빙서류(택1)

- [붙임4]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실시)

※ 자동차검사업체 직인이 **날인**되어야 함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실시한 관능검사 또는 정기검사 결과서

- ⑥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⑦ 차량 사진 4매 (전·후·좌·우) - 반드시 출력 지참
- ⑧ 생계형 및 소상공인 소유차량 제출 서류 - 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생계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생계형) : 차상위계층확인서
  - 소상공인 소유차량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영업용 차량 : 차량등록증 원부

《대리 신청하는 경우》

- 공통서류 + 위임장과 차주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공동 소유인 경우》

- 공통서류 + 소유자 중 1명을 신청인으로 하고 또 다른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분증 사본 제출

《법인 소유인 경우》

- 공통서류 +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및 신청자 신분증 사본 제출

**【유의사항】**

조기폐차제도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이므로 **반드시 정상운행 판정 차량**이어야 함(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로 확정 전에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시 구비서류 (선정 후 보조금 청구시)**

- ① [붙임5]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 ②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1부
- ③ 소유자 통장 사본 1부
- ④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하동군 발행분) 1부
- ⑤ [붙임7] 청렴이행서약서 1부

**【유의사항】**보조금 신청은 **폐차 완료 후 상기서류 구비하여 확정통보 후 2개월 이내까지 신청(기간 이후 폐차 및 보조금 신청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수출말소나 차령초과말소의 경우 보조금 지급 제외

※ 반드시 신청자(차량소유자)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및 추가지원 보조금 지급 청구**

- ① [붙임6]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 ② 신차(중고차 포함)의 자동차등록증(구매계약서 인정 불가) 1부

- ③ 소유자 통장 사본 1부
- ④ [붙임기] 청렴이행서약서 1부
- ※ 신차 구매로 인한 추가보조금은 자동차 제작사에 직접 지급 가능

**【유의사항】**추가보조금 신청은 **조기폐차 대상확인서 발급 후 4개월 이내까지 신청(기간 이후 추가보조금 신청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반드시 신청자(차량소유자)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지원대상자 취소 ◀

- 조기폐차 지원 :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후 **2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차(중고차)구입 :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후 정당한 사유없이 **4개월 이내**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기타

- 접수기간 중 차량별 보조금 금액 관련 문의 개별 답변 불가함
-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함
- 조기폐차 후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이 1회 내지 2회 부과될 수 있음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 접수자라 하더라도 검토결과 조건이 맞지 않거나 구비서류를 갖추지 아니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및 「‘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문의

- 전화 : 하동군 환경보호과 조기폐차 담당자(☎055-880-2564, 2566, 2567)



[붙임2]

## 위 임 장

수 입 자 (위임을 받는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위 임 자 (위임을 하는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상기 위임자\_\_\_\_\_는(은) 수입자\_\_\_\_\_에게 차량번호\_\_\_\_\_호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 붙임 1. 인감(법인)증명서 1부.  
 2. 수입자 신분증 사본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_\_\_\_\_ (인)  
 인감(법인)도장

[붙임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기환경보전법」 제 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 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예관법률 등
-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성명)

(서명, 날인)

○ 하동군수 귀중







[붙임기]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하동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 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하동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하동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1. . .

성 명

(서명)

# 포 기 서

① 사 업 명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 청 인 (대표자)	② 성 명			③ 생년월일
	④ 주 소			
신 청 내 용	⑤ 차 량	차 명		
		등록번호		
	⑥ 포기사유	<input type="checkbox"/> 상기차량을 지속적으로 운행 <input type="checkbox"/> 향후 조기폐차 예정 <input type="checkbox"/> 기타( )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기 신청한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포기합니다.

2021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 하동군 공고 2021-828호

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20.

하동군수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지방세환급금 군 세입 귀속
2. 공고기간 : 2021. 05. 20. ~ 2021. 06. 03. (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자료참조
4.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
5. 송달내용 : 해당 납세자께서는 공고기한 내 아래 전화로 지방세환급금 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행사하실 수 없으며 해당 지방세 환급금은 하동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하동군청 재정관리과 (☎ 055-880-2294)

지방세환급금세입조치대상시효소멸내역('21.05.18기준)

(단위:원)

환급번호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과세번호	환급사유	환급총액	시효완료예정일
계	68명				249,150	
488502015001553	이**진	580108-*****	104001-2015-08-1-410-021002	31 기납부자 이종납부	8,800	2020-08-31
488502012002606	적**면**감 **농**합	614-82-*****	106001-2012-06-1-330-016849	44 자동차세 과세후 폐차 또는 도난 등에 의한 말소	3,620	2017-07-02
488502015001230	정**하	750214-*****	106001-2015-06-1-250-015510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2,880	2020-06-25
488502015001619	황**훈	780814-*****	106001-2015-06-1-250-015767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26,140	2020-06-19
488502016000097	여**식	480419-*****	106001-2015-06-1-250-018306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1,020	2020-06-30
488502015001550	조**순	691202-*****	106001-2015-06-1-310-012612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1,570	2020-07-31
488502016000034	신**일	520419-*****	106001-2015-06-1-320-011340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890	2020-06-22
488502015001811	박**기	500808-*****	106001-2015-06-1-320-014161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7,600	2020-06-29
488502015002036	민**숙	750125-*****	106001-2015-06-1-320-014178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4,360	2020-06-24
488502016000005	주**욱	591227-*****	106001-2015-06-1-340-000253	44 자동차세 과세후 폐차 또는 도난 등에 의한 말소	810	2020-08-24
488502015000775	문**순	640407-*****	106001-2015-06-1-340-015521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15,240	2020-06-30
488502016000033	박**애	281230-*****	106001-2015-06-1-350-011064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1,030	2020-06-22
488502015000681	정**례	660325-*****	106001-2015-06-1-360-002733	44 자동차세 과세후 폐차 또는 도난 등에 의한 말소	1,130	2020-06-30
488502015002031	허**경	600820-*****	106001-2015-06-1-360-013955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4,570	2020-06-19
488502016000010	김**이	830115-*****	106001-2015-06-1-370-003006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210	2020-12-31
488502015002126	정**태	380107-*****	106001-2015-06-1-370-003416	44 자동차세 과세후 폐차 또는 도난 등에 의한 말소	6,240	2020-06-17
488502016000029	정**무	600206-*****	106001-2015-06-1-410-010627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3,500	2020-06-30
488502015001789	박**문	470205-*****	106001-2015-06-1-410-011922	44 자동차세 과세후 폐차 또는 도난 등에 의한 말소	6,670	2020-06-30
488502015001638	이**진	580108-*****	106001-2015-06-1-410-018060	44 자동차세 과세후 폐차 또는 도난 등에 의한 말소	10,190	2020-06-30
488502015002217	엄**웅	511004-*****	106001-2015-06-1-420-018389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2,220	2020-06-30
488502016000108	M*R*T*B* * G*T*A*N	721209-*****	106001-2015-12-1-250-019358	44 자동차세 과세후 폐차 또는 도난 등에 의한 말소	5,170	2020-12-17
488502016000188	신**주	951111-*****	106001-2015-12-1-250-028806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700	2020-12-23
488502015001717	박**철	700725-*****	140001-2015-06-3-250-003711	51 국세경정에 의한 경정	16,800	2020-09-25
488502015000943	소**삼	550902-*****	140001-2015-08-2-250-000176	72 타시군환급(국세 확정신고에 의한 환급)	42,200	2020-07-01
488502015000945	황**정	680219-*****	140001-2015-08-2-250-000178	72 타시군환급(국세 확정신고에 의한 환급)	33,280	2020-07-01
488502015000949	조**근	680529-*****	140001-2015-08-2-250-000182	72 타시군환급(국세 확정신고에 의한 환급)	42,200	2020-07-01
488502015001340	오**숙	681009-*****	140001-2015-08-2-310-000429	72 타시군환급(국세 확정신고에 의한 환급)	110	2020-07-01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20호서식]

### 공 고 문

하동군 공고 제2021-861호

확인서 발급 신청인	성명(법인명) ※ 붙임참조	생년월일(등록번호) ※ 붙임참조
	부동산의 표시 ※ 붙임참조	
	취득사유 ※ 붙임참조	
	공고기간 2021년 5월 25일 ~ 2021년 7월 24일 (2개월)	
대장상 소유자	성명(법인명) ※ 붙임참조	생년월일(등록번호) ※ 붙임참조
등기 명의인	성명(법인명) ※ 붙임참조	생년월일(등록번호) ※ 붙임참조

위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지번별조서 1부.

2021년 5월 25일

하 동 군 수

#### 유 의 사 항

1.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 이의신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공고건축물지번별조서

공고기간 : 2021. 05. 25. ~ 2021. 07. 24. (2개월)

연번	부동산의 표시				확인서 발급 신청인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		건축물 등기명의인		취득사유	
	건축물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1	화개면	용강리	370	대	24.10	김봉석	670629	이기한	420116	(미등기)		매매
					14.00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21호서식]

### 이 의 신 청 서

• 색상이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공고기간 만료일 부터 2개월
------	------	-----	------	--------------------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m <sup>2</sup> )	

위의 부동산은 본인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년      월      일      가 확인서 발급신청을 했다는 공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별첨 소명서류와 같이 위 부동산은 본인의 소유임이 명백한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이의신청인의 소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소명서류	수수료 없음
------	------------------------------	-----------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장소관청(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 공고 제2021 - 881호

##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오니, 이의가 있을 경우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가 격 기 준 일 : 2021. 1. 1.
2. 결 정 · 공 시 일 : 2021. 5. 31.
3. 결 정 · 공 시 필 지 수 : 285,651필지
4. 결 정 · 공 시 내 용 : 토지지면별 m<sup>2</sup>당 가격
5. 이의신청 및 처리
  - 기 간 : 2021. 5. 31. ~ 6. 30.
  - 신 청 자 :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신청방법
    - 군청 재정관리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된 필지는 이의신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현지조사 및 감정평가법인 등의 재검증과 하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
6. 기타사항
  - 하동군 홈페이지에서도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하동군청 재정관리과(055-880-22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31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공고 제2021-891호

# 2021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 공고(2차)

노후된 건설기계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1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을 실시하오니 희망하시는 건설기계 소유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5. 31.

하 동 군 수

##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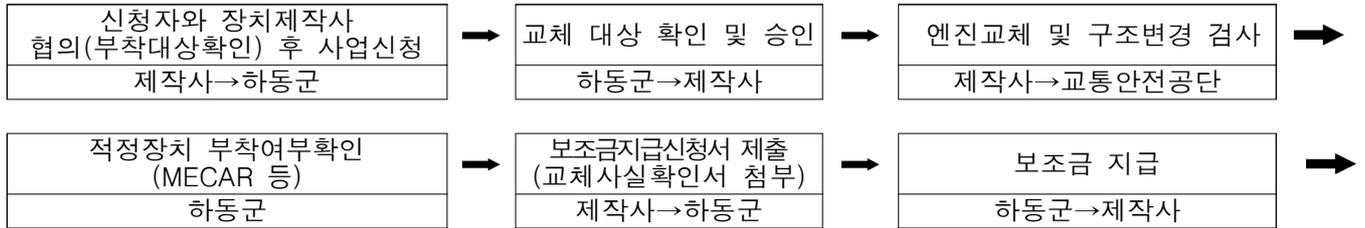
- 신청기간 : 2021년 6월 1일(화) ~ 예산소진 시까지
- 사업물량 : 25대, 547,490천원
  - ※ 장치종류에 따라 차등지원 됨에 따라 지원 대수 변동 가능
- 대상자 선정 : **선착순**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
  - 사용본거지가 하동군에 등록된 건설기계 중 Tier-1 이하('04년)의 엔진을 탑재한 노후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등)
  - ※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 지원조건
  - 신청일 기준 하동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사용본거지 하동 등록)
  -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건설기계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교체 인증조건에 적합한 건설기계
  -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는 노후건설기계 및 의무사용 이행기간 충족이 불가능한 건설기계는 부착 제한(장치제작사 확인)
  - 엔진교체 구조변경일로부터 2년간 의무사용 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보조금 회수 (회수기준 : 수도권대기법 시행규칙 별표8의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 장치제작사가 하동군에 승인 신청 시 신청자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등으로 인한 체납이 없을 것(하동군 내에 체납이 없는 자)
-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지 게 차						굴 삭 기		14톤급
	2톤급		4톤급		6톤급		5톤급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장치가격및 보조금	9,366	11,493	14,996	18,000	16,620	19,295	12,992	14,386	20,354

1)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사업절차 및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차량 소유자는 **엔진교체 제작사에 엔진교체 가능여부를 사전에 협의하고, 장치 제작사를 통해 신청서를 하동군으로 제출**  
→ 엔진교체 신청과 보조금 청구·수령 권리는 장치제작사에 위임
- 교체가능여부 확인을 한 장치제작사가 하동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건에 한하여 엔진 교체 후 보조금을 지원함
- 보조금은 신청인이 계약을 체결한 장치제작사에 직접 지급하며, 취득세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지방세가 부과될 경우 자부담하여야 함

○ 신청서류

- [붙임1]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붙임2] 건설기계 엔진교체 계약서 1부
-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1부
- 장치부착 가능 여부에 대한 장치제작사의 확인서 1부
- 건설기계 소유자 신분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법인차량 : 사업자등록증 1부

**보조금 청구 및 지급**

- 청구기한 :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청구
- 청구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동군청 별관 1층 환경보호과)  
- 주소 : 우)52333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환경보호과

○ **보조금 청구서류**(※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붙임3]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 [붙임4] 건설기계 엔진교체 확인서 1부
- [붙임5]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포함) 각 1부
- [붙임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붙임7] 제작사·신청자 청렴이행서약서 각 1부
- 건설기계 엔진 배출가스 인증서 1부
- 건설기계등록증(구조변경내역 필) 1부
- 제작사 사업자등록증 1부
-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1부
- 제작사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원본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함
-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
- 장치 보증기간 내 매연 저감장치 및 교체 엔진을 탈거하는 경우에는 기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 접수자라 하더라도 검토결과 조건이 맞지 않거나 구비서류를 갖추지 아니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건설기계 엔진교체 제작사**

No	제작사	연락처	장치명
1	(주)이알인터내셔널	1588-8395 031-940-2560	○ 지게차 : 2톤급, 4톤급, 6톤급 ○ 굴삭기 : 5톤급
2	(주)알오씨오토시스템	031-270-6300	○ 지게차 : 2톤급
3	(주)크린어스	1577-9014	○ 지게차 : 2톤급, 4톤급, 6톤급 ○ 굴삭기 : 5톤급
4	HK-MnS(주)	1588-7657 070-4267-2727	○ 지게차 : 2톤급, 4톤급, 6톤급
5	(주)이엔드디	1644-2402 02-2029-7034	○ 지게차 : 2톤급, 4톤급, 6톤급
6	(주)세라컴	02-2628-0900 041-531-0657	○ 지게차 : 2톤급, 4톤급, 6톤급

**□ 기타문의** : 하동군 환경보호과(☎055-880-2564)

[붙임1]

##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참여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 .
	주 소			
	연락처		휴대폰	
건설기계	건설기계명	굴삭기 (    ) 지게차 (    )	등록번호	
	형식(모델)		원동기형식 (엔진형식)	
	주행시간		최초등록일	
	작업 내용 (용도)	육내에서/육외에서    물건    운반 기타    등등	사 업 자	

2021년 하동군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1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 제출서류

1.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앞·뒷면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자인 경우) 1부
3. 장치부착 가능 여부에 대한 장치제작사의 확인서 1부

하동군수 귀하





[붙임4]

**건설기계 엔진 교체 확인서**

다음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설기계 엔진교체를 완료하고 준수 사항 및 관련 서류를 필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건설장비 현황**

소유자		건설기계명		형식	
등록번호		연식 (최초등록일)		원동기 (엔진)형식	
규격		차대일련번호		주행시간	hr

**엔진교체 현황**

엔진형식		규격		제품(일련) 번호	
엔진교체 사업자		장착장		교체일 (구조변경일)	년 월 일

**준수사항**

- 엔진교체 후 폐차 또는 수출로 인한 등록말소할 경우 보조금 반납의무 있음  
- 교체일~2년(의무사용기간) 이내 : 보조금 반납(사용기간별 20~70%)
- 탈거된 구형엔진 및 주변장치는 하동군에 반납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행】**
- 엔진교체 후 성능이 유지되도록 차량 정비 및 장치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지원 받는 보조금의 청구·수령의 권리는 엔진교체사업자에 위임됨

**인수 서류 목록**

- 건설기계등록증(구조변경 내역 확인 필)
- 장치 보증서(건설기계 소유주 고의·부주의로 발생될 수 있는 결함사항 포함)
-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 보조금의 청구·수령 위임장 및 인감증명(또는 사업자등록증)
- 건설기계소유자(또는 건설기계 관리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장치 A/S 담당 사업소 및 비상연락 전화번호
- 건설기계 엔진 교체 확인서 사본

2021년 월 일

작성자(건설기계소유자 또는 건설기계관리자) : (인), 연락처( )

확인자(엔진교체사업자) : (인), 연락처( )

○○○○회사 대표자 귀하

[붙임5]

위 임 장	
차 량 의 표 시	차량등록번호 :  차 명 :  저감장치종류 :
장치부착(엔진개조)일	2021 년 월 일
위임의 내용	000시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권 위임
위임한 보조금액	금 원정
위 임 인	대 리 인
차량소유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대리인 : (장치제작사)  ㉠  주소 : 장치제작사 주소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차량에 대한 00시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2021 년 월 일
차량운행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차량 소유자와의 관계	
(성명은 반드시 정자로 본인필체로 작성, ㉠은 인감 또는 법인 도장 날인)	

[붙임6]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 ◆ (수집 · 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 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의 배출가스 정보관리전산망 설치 · 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82조의2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 · 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1 년    월    일

건설기계소유자 또는 건설기계관리자(성명)

(서명, 날인)

하동군수 귀중

[붙임7]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하동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 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하동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하동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1. . .

성 명

(서명)

금남면 공고 제 2021 - 13호

## 2021년 가시권 덩굴류 제거 작업원 모집공고

도로변 가시권 미관을 저해하고 수목의 생장을 방해하는 칩 등 덩굴류를 제거하기 위하여 『2021년 가시권 덩굴류 제거반』의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1년 6월 일  
금 남 면 장

### 1. 모집인원 : 2명

- ※ 모집인원에 미달 되더라도 필요시 면접을 통하여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 모집인원 초과 시 면접을 통하여 선발

### 2. 모집방법 : 공개모집

### 3. 접수기간 : 2021. 6. 2.(수) ~ 6. 8.(화) 09:00 ~ 18:00

### 4. 접수방법 : 방문접수(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치 않음)

### 5. 접수장소 : 금남면사무소 산업경제부서

### 6. 종사업무

- 가. 주요도로변 가시권 덩굴류 제거 및 풀베기
- 나. 소공원 내 덩굴류 제거 및 풀베기
- 다. 기타 산림업무

### 7. 응시자격

- 가. 모집공고일 현재 하동군 진교면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하고 있는 자
- 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 다. 개인 예초기 소지자 우대
- 라. 응시연령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
- 마. 상시근무 가능자(겸직 불가)

### 8. 응시자격의 제한

- 가. 칩 등 덩굴류 제거작업을 위한 작업과 작업도구 사용에 지장이 있는 자
- 나.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한다”)재학생

**9.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1부
- 나. 주민등록등본 1부
- 다.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1부
- 라. 재산세 등 완납여부 확인(※ 면에서 자체 확인)

**10. 채용방법**

- 가. 1차 심사 : 서류심사
- 나. 2차 심사 : 면접(필요시)

**11. 합격자 발표 : 2021. 6. 11.(금) / 개별통보**

※ 면접시험 시행 시 합격자 발표는 연기될 수 있음.

**12. 근로기간 : 2020. 6월 ~ 8월 (※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13. 임금 및 근로조건**

- 가. 근무시간 : 1일 8시간 (09:00~18:00)
- 나. 휴게시간 : 12:00 ~ 13:00(1시간)
- 다. 임 금 : 69,760원/1일
- 라. 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 1일 유급휴가 부여(근로 시 휴일수당 가산 지급)
- 마. 1월간 계속참여시 1일의 연차유급휴일 또는 1일분의 임금 추가지급
- 바. 4대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14. 기타사항**

- 가. 응시원서 등 허위 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나.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다. 선발된 후 건강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구비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발 취소됩니다.
- 라. 지정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근로자 본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 마.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금남면 산업경제담당부서(055-880-62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덩굴류 제거작업원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성 명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전화번호					
주 요 이 력 사 항	최종학력 및 전공		학교(재학, 중퇴, 졸업), 전공 :						
	자격 면허	1. 2. 3.		교육 이수	교육명	교육 일수	비 고		
					1.	주			
					2.	주			
			3.	주					
	병역	①필	②미필	③면제	복무기간	년	개월		
	혼인	①기혼	②미혼	③기타	세대주	①해당	②해당없음	부양가족 (*세대인원)	인 (* 인)
	취업 관련	①실직	②미취업	실업 기간	년	월	전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업 일용직 주부, 기타	
신장	Cm	체 중	Kg	교정시력	좌( ), 우( )	색맹	유, 무		
기타 사항	주 거 상 태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							
	세대원소득	월	만원	재 산 상 황	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경 력 사 항	① ② ③								
기타 사항 기술 (본인)	차량 소유여부 ( ○ ×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여부			기간 및 참여사업 :						

<붙임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재산세완납여부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족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산림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20    년    월    일

금남면장 귀하

하동군 공고 제 2021 - 924호

# 하동군 민원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안)

하동군 민원과 여권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일  
하 동 군 수

## 1. 채용근거

- 하동군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

## 2.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분야별	담당부서	담 당 업 무	채용인원	근무기간
기간제근로자 (행정사무원)	종합민원	여권사무 업무보조	1	2021. 7. ~ 2021. 11.

※ 근무기간 및 채용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음.

## 3. 응시자격요건

- 가.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자
  - 근무기간 내 상시근무 가능자(겸직불가)
- 나. 성 별 : 제한없음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다. 「하동군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12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라. 공고일 현재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4. 채용우대조건

공 통	여권사무 업무보조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산관련 자격증(워드프로세서, 엑셀 등)을 취득한 자</li> <li>• 행정업무 유경험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권 사무 유경험자</li> </ul>

#### 5. 임금 및 근로조건

- 가. 보 수 : 일급 69,760원(2021년도 노임단가 적용)
- 나. 근로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주5일 근무(주차, 연차수당 지급)
- 다. 4대보험 가입(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보수에서 공제
- 라. 기타 근로조건은 「하동군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함

#### 6. 채용방법 및 일정

- 가. 1차 : 서류전형
- 나. 2차 : 면접(1차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하여 실시하되, 채용인원보다 인원이 많은 경우 실시)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채용공고	2021. 6. 3.(목)~ 2021. 6. 18.(금)	• 하동군 홈페이지 (www.hadong.go.kr)	
응시원서 접수	2021. 6. 3.(목)~ 2021. 6. 18.(금) (09:00~18:00)	• 하동군 민원과 종합민원부서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 055-880-2073)	방문접수(우편, FAX, 인터넷 접수 불가) 토, 일 제외, 근무시 내(09:00~18:00) 접수
1차 서류전형	2021. 6. 22.(화)	• 합격자 개별통보	
2차 면접전형	2021. 6. 24.(목) 14:00 ~	• 추후공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최종합격	2021. 6. 25.(금)	• 합격자 개별통보	서류·면접접수 합산 최고득점자 선발

#### 7.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1부(붙임양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4cm) 1매 부착
- 나. 이력서 1부(붙임양식)
- 다.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 라.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붙임양식)
- 마. 주민등록 초본 1부(병력사항 및 주소이력 전체 기재된 것)
- 바. 경력 또는 자격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8. 유의사항

-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나. 제출된 서류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반환이 가능하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다. 접수 마감 후 모집분야 응시자가 선발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라.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할 예정입니다.
- 마. 기간제 근로자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임용 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과(055-880-2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응 시 원 서

**하동군수 귀하**

본인은 하동군 민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 응시는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응시자격 및 가산특전 등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것을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응시분야(채용분야) : 여권사무 업무보조**

주소 (도로명주소)							자택전화 :							
							이동전화 :							
학 력 (최종)	대학교	이	하	년	월	일	학교(							) 졸업, 재학, 수료, 중퇴
	대학원	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재학, 수료, 중퇴		
* 응 시 번 호							성 명	(한글)						
								(한자)						
주 등 번 호							직    급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응시표	성 명	(한글)						사    진 (6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 응 시 번 호	주 등 번 호							
응시분야 (채용분야)	년    월    일							
직    급	하 동 군 수 귀하							
<b>주 의 사 항</b>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 위의 철압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면접시험 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유 의 사 항 》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작 성 요 령 》

- ① 응시원서 : 응시원서의 '응시번호'란을 제외하고 **자필**로 작성 제출  
 ※ 응시번호(\*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②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을 수령할 수 있는 곳)을 기재
- ③ 학 력 : 대학교 이하란은 모든 응시자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대학원 졸업·재학·수료·중퇴인 응시자는 출신대학 및 대학원 모두를 기재함
- ④ 성 명 : 정자로 기재함 (3곳)
- ⑤ 주민등록번호 : 정자로 기재 (앞면)



## 이 력 서 작 성 요 령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자필 또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작 성 요 령 》

- ①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 ② 학력사항 : 최종 학력이 대학원 졸업인 경우 대학교도 기재
- ③ 경력사항 : 행정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을 기재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 ④ 자격·어학 : 해당 자격증명 또는 어학성적을 기재하되, 해당 자격증 및 어학성적 사본 제출

<붙임 3>

자 기 소 개 서

성장배경

※ 자기소개서 분량은 A4용지 2매 내외(워드프로세서 사용)  
- 서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기재 가능

성 격  
/  
장 · 단점

경력사항

입사 후  
포부

